

#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월 17일 부천시의회 의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1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의원)

### 1. 제안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지구단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총괄계획가·총괄사업관리자, 주민대표,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공통적인 안건은 협의회에서 담당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한정된 안건은 해당 지구단위협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다. 지구단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총괄계획가·총괄사업관리자 및 부천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함.
- 지구단위협의회 임기, 임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적용함.

라.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위원의 해촉(안 제8조)

-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일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담당이 됨.(안 제9조)

바. 부의안건의 설명, 회의 등의 비공개, 수당 및 비밀의 유지, 회의록,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사업협의회와 지구단위협의회 차이 점은 무엇인가?	○ 사업협의회는 시전체를 총괄하는 협의체이며 지구단위협의체는 원미, 소사, 고강지구에 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위원은 위원회별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현재는 규정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조례제정 시행시 문제점이 있는지?	○ 조례가 제정 시행되더라도 문제점이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사업협의체 위원 구성에 도의원을 참여시켜 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뉴타운 사업추진관련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국,도비지원 등 경기도와의 업무원활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도의원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17호
의결 년월일	2008. 1. 23 (제141회)

발의년월일 : 2008. 1. 17.

발 의 자 : 김혜성의원등8인

## 1. 제안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지구단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나.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총괄계획가·총괄사업관리자, 주민대표, 도시·건축·조경·교통

- 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공통적인 안건은 협의회에서 담당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한정된 안건은 해당 지구단위협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다. 지구단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총괄계획가·총괄사업관리자 및 부천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함.
- 지구단위협의회 임기, 임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적용함.

라.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위원의 해촉(안 제8조)

-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일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이 됨.(안 제9조)

바. 부의안건의 설명, 회의 등의 비공개, 수당 및 비밀의 유지, 회의록,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

##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이하 “지구단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총괄계획가·총괄사업관리자, 주민대표,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는 재정비촉진지구 출신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정비축진지구별로 각 1명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통적인 안건은 협의회에서 담당하고, 해당 재정비축진지구에 한정된 안건은 해당 지구단위협의회에서 담당한다.

⑤ 지구단위협의회의 협의를 받은 안건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의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구단위협의회) ① 지구단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구협회의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총괄계획가·총괄사업관리자 및 부천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

③ 지구단위협회의 임기, 임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회 및 지구단위협회의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협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 협회 및 지구단위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이다.

제10조(부의안건의 설명)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의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의 비공개)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의 회의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협의 또는 자문사항
4. 토의진행 및 위원의 발언 내용
5. 협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지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3. 관계전문가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5. 사업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 부터 제4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운영수당 등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